

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3. 2. 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재안이유

- 우리시는 임진강 유역에 대한 수해예방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시 재정기반확충을 위해 2000년부터 문산읍 마정리, 진동면 동파리 2개 지역에서 시 직영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.
-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, 한편으로는 경영이념 부족과 인적자원의 행정적 한계성 등으로 만족할 만한 경영수익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.
- 이에 우리시는 골재채취직영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 직영골재사업의 행정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골재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질 높은 경영행정체제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대표적 경영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골재채취직영사업을 민간 위탁코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.

☐ 주요골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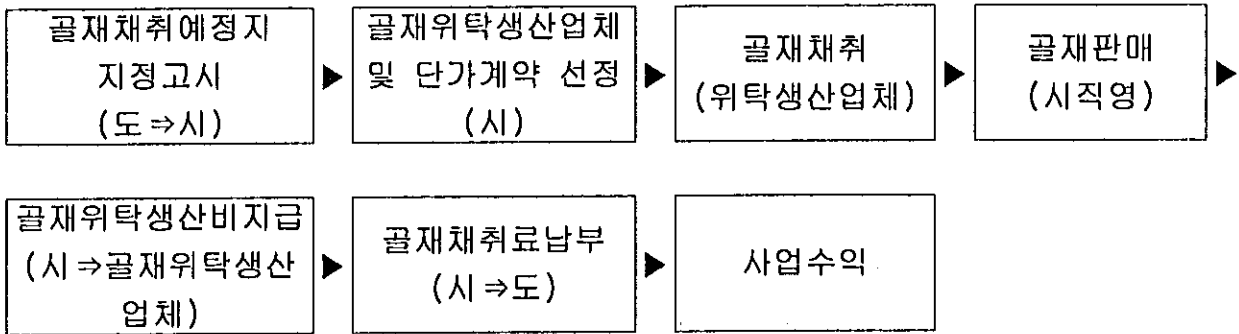
- 민간위탁의 범위를 골재직영사업장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.
-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.
-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.

☐ 관련사업계획서 : 별첨

☐ 관련비영민첩서 : 별첨

2. 골재채취판매사업의 추진체계

○ 골재채취형태 및 판매절차(직영사업방식)



○ 추진방법 : 골재생산 ⇒ 업체위탁, 골재판매 ⇒ 시 직영

【 생산업체 】

- 준설작업(준설선) ⇒ 선별작업(모래, 자갈 분리 ⇒ 운반 및 집토 ⇒상차
- 시에서 위탁생산비 지급 (계약에 의거 월단위로 지급)

【 파 주 시 】

- 골재차량 ⇒ 골재반출차량 계근(감시요원 근무) ⇒ 반출증 발급
- 골재수급관리, 골재판매 및 홍보, 하천사용료 납부(정기도)

○ 사업추진 인력 구성

- 업무담당자 : 1명
(골재원개발과 사업계획 수립, 골재채취직영사업장 운영과 관련 부대시설물 관리, 골재판매와 수입 관리, 생산비 지급, 골재채취료 납부, 골재반출요원 관리 등)
- 골재계근 및 반출 : 청원경찰 7명
※ 청원경찰의 주요 임무는 하천불법행위 감시활동이나 골재계근 및 반출관리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활용

3. 시직영골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

○ 골재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부족

⇒ 다변화되는 골재시장 조사나 골재수급상황에 따라 골재 생산과 판매 및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영 행정체계 불비

○ 골재 마케팅업무의 부재

⇒ 임진강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아주 양질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서울과 인천등 골재수요지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 발생해결을 위한 우리시 및 인접 시군 레미콘공장 등 골재 수요처를 대상으로 골재 마케팅 필요

○ 골재직영사업의 합리적 경영이념 부족

⇒ 골재직영사업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과 창의적 업무발굴로 이윤 창출보다는 규정과 제도적 틀안에서 활동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수익 극대화에 달성에 지장 초래

○ 직영사업추진 인적 자원의 한계

⇒ 골재채취직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문의 실무담당자 1인이 일반업무와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수립부터 계약.생산.판매.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내실있고 효율적인 골재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, 또한 하천불법행위 감시활동이 본연의 임무인 청원경찰로 하여금 골재계근 및 반출감시를 병행하도록 하여 업무의욕과 직원사기 저하 초래

4. 시직영골재사업의 민간위탁 필요(당위)성

- 임진강 유역의 수해예방과 생태계복원, 수질개선 등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면서 골재 직영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영기법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대표적 경영수익사업으로 자리를 굳혀 빈약한 시 재정 건전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골재직영사업 운영체계구축 필요성 대두

⇒ 골재사업의 경쟁력 확보로 수익성 개선

- 이에 현재의 시직영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합리적 경영이념의 부족, 탄력적이지 못한 경영수익 사업체계, 인적 행정적 한계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며, 순수 민간업체 위탁시 기업의 이윤추구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골재채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골재직영사업의 민간위탁이 시행되어야 함.

⇒ 시의 운영비 부담 완화 및 투명성, 공정성 제고

- 그리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 민간에게로 골재채취직영사업 위탁을 통하여 우리시가 도모하려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, 경영기법과 경험축적을 활용한 전문성과 경영효율성 극대화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여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함은 물론 책임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

- 또한 골재직영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용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창의적 골재원 발굴과 관리가 가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골재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.

5. 타시군 골재채취사업 운영 사례

<강원도 양양군>

- 1979년 강원도 양양군이 전국 최초로 하천 모래 채취판매로 경영 수익사업을 실시하였으며, 준설선등 채취장비를 확보해 채취부터 판매까지 직영하였으나 2000. 8. 17 환경정책기본법개정시행에 따라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문제 및 자연환경 보호로 인한 환경연합의 문제 제기 등으로 2001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개 여부는 불투명함

<충남 논산시>

- 논산시의 경우도 금강지구 골재채취 사업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로 골재채취사업을 사실상 포기함

<김포시>

- 김포시는 '92년부터 4차에 걸쳐 한강골재채취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9,600백만원의 순이익을 거두었으며, 2001. 9. 29일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한강 골재채취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위탁함.

(생산:위탁업체, 판매:고촌농협, 업무관리:시설관리공단)

※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타당성검토 의견

“시설관리공단의 대표적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익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위생환경사업소, 조각공원등의 걸손을 보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임”

- 경영성과('97.~2001. 6.24현재)

· 수입액 11,822백만원

(판매 10,497,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,325)

· 지출액8,922백만원

(대행생산비 5,314, 위탁판매수수료 315, 군부대 194,

하천점용료 2,649, 인건비 400, 시설장비 유지비 50)

· 순수익 2,900백만원(수익율 24.5%)

- 채취지구는 1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별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상류부터 하류로 채취를 하고 있음

6. 수탁업체 선정기준

- 임진강 유역의 수해예방과 생태계복원, 수질개선 등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
- 골재채취직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
-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,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
- 골재판매 업무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여부
- 골재사업의 경영기법 및 경험축적을 활용하여 골재직영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
- 골재직영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한지 여부

7. 위탁사무의 범위

- 골재원의 개발과 사업계획 수립업무
- 골재채취직영사업장 운영과 관련 부대시설물 관리업무
- 골재 판매 및 수익 관리업무

8. 위탁 기간 및 방법

-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, 별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함.
-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.

9. 수탁 업체 선정

- 관련법령
 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 -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 -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운영규정
- 수탁대상자
 -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

10. 시직영골재채취사업 경영수익성과

○ 사업지구현황

지구명	위 치	채취면적 (천㎡)	승인량 (천㎡)	사업기간	위탁 생산업체	비 고
동파지구	임진강 초평도~ 전진교 구간	269	541	2000~ 2002년(3년)	어민협의회 (수익계약)	계속사업 추진(2003. 12)
마정지구	임진강 초평도~ 통일대교 구간	500	762	2000~ 2002(3년)	서강산업개발(주) (공개경쟁)	계속사업 추진(2003. 6)
사목지구	임진강 반구정~ 내포리 구간	433	1,246	-	-	2003. 8월 생산 예정

○ 골재생산(판매)현황

(단위 : 천㎡, 백만원)

구분		계	2000년	2001년	2002년	비고
계	생산량	1,354	285	770	299	
	금액	8,219	1,722	4,237	2,260	
마정 지구	생산량	788	116	373	299	
	금액	4,851	700	1,891	2,260	
동파 지구	생산량	566	169	397	-	
	금액	3,368	1,022	2,346	-	

○ 수지분석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	생 산			생산비 지급액	하천 사용료	예산 지원액	비고
	판매금액	순수익금	비율				
계	8,219	871	10.6	4,784	2,146	418	
2000년	1,722	115	6.7	974	470	163	
2001년	4,237	347	8.2	2,690	1,150	50	
2002년	2,260	409	18.1	1,120	526	205	

※ 순수익금에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포함하지 않음.

(징수교부금 : 2000년 235백만원, 2001년 575백만원 2002년 263백만원)

※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2000년~2002년까지의 순수익 총액은 1,944백만원임.

소관 실·과·소		건설과 ☎ 940-4642
입안자	건설과장	김영구
	건설행정담당	박경수
	담당자	정용진

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우리시는 임진강 유역에 대한 수해예방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시 재정기반확충을 위해 2000년부터 문산읍 마정리, 진동면 동파리 2개 지역에서 시 직영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.
- 그동안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, 한편으로는 경영이념 부족과 인적자원의 행정적 한계성 등으로 만족할 만한 경영수익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.
- 이에 우리시는 골재채취직영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 직영골재사업의 행정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골재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질 높은 경영행정체계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대표적경영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골재채취직영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골자

- 민간위탁의 범위를 골재직영사업장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함.
-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함.
-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.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본 동의안은 골재채취직영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조 직법제6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과 파주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

제7조(민간위탁기관 직격자 심사위원회)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위탁기관 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,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지방의회의원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.

나. 내용 타당성

- 우리시는 임진강유역의 골재부존자원이 산재되어 있고 수해예방과, 임진강 수질개선, 생태계 복원 등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면서 골재자원의 고갈 등 골재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골재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부족과 골재직영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이념부족, 직영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과 경영행정의 한계에 부딪히 내실있고 효율적인 골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음.
- 골재사업 수지분석결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골재생산 순수익금이 8억 7,100만원으로 연간 2억 9,000만원정도의 순 수익금으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수익 증대에 상당히 못미치는 결과라고 판단됨.
- 골재채취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골재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영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

으로 시 재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골재채취 직영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골재사업의 경쟁력 확보로 수익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민간위탁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

위탁업무의 범위를 골재원의 개발과 사전환경성검토, 군부대협의, 어민 피해보상문제 등 모든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업체의 업무 능력이 가능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